

의안번호	2214958
의 퇴 인	정태호 의원
회 답 일	2026. 1. 26.
추계번호	25A676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해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억 1,600만원(연평균 2억 3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시·도 숙의공론장 운영 (안 제7조의2 신설)	1,016	-	-	-	-	1,016	203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의2 신설 (주민등의 의견수렴 등)	시·도지사는 지역계획¹⁾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로 주민등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음(제1항) 시·도지사는 숙의공론장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제3항) 제2항에 따른 숙의공론장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의2 신설 (주민등의 의견수렴 등)	○	-

1)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을 말함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공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숙의공론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숙의공론장은 시·도지사의 지역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되는 의견 수립 절차이며, 운영 주체 또한 시·도지사이므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소요 비용은 지역계획이 수립되는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계획은 각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2020~2025년)의 대상 기간을 고려할 때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이 2026년에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기간 중 2026년에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모든 시·도지사가 현행법 제7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숙의공론장 운영 또한 17개 시·도가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숙의공론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기도의 공론화 운영 사업 예산을 준용하여 추계
 - 경기도는 도민참여 공론화 운영 사업을 통해 도정 관련 현안 및 갈등 사안 등에 대하여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론장을 운영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
 - 해당 재정사업의 성격이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숙의공론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공론장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편성 내역을 준용
 - 이에 따라 숙의공론장 운영 비용은 ①공론화를 위한 사전 추진단 및 위원회 운영 비용, ②숙의공론장 운영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계
 - 공론화 사전 추진단 및 위원회 운영 비용으로는 위원에 대한 회의 수당과 자료 제작·인쇄비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숙의공론장 운영 비용으로는 숙의에 참여하는 발표자, 토론자 등에 대한 수당, 자료 발간 비용, 공론장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 등 행사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각 의사결정기구의 위원 수, 회의 횟수, 단가 및 예산액 등은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앞서 제시하였듯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이 2026년에 수립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17개 시·도의 숙의공론장 운영에 따른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억 300만원(연평균 2억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900\text{만원}^1 + 5,000\text{만원}^2) \times 17\text{개 시·도} = 10\text{억 } 300\text{만원}(5\text{년간 총 } 2\text{억 } 100\text{만원})$
 - 1) 공론화 사전 추진단 및 위원회 운영 비용
 - 2) 숙의공론장 운영 비용

[표 2] 숙의공론장 운영 비용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숙의공론장 운영 (안 제7조의2 신설)	1,003	-	-	-	-	1,003	201

[표 3] 2026년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편성목(통계목)	부기명	산출내역	2026년 예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론화추진단 운영	- 공론화위원회 운영: 2,000천원 · 200천원×위원 10명×1회 = 2,000천원 - 공론화추진단 운영: 6,000천원 · 200천원×추진단 10명×3회 = 6,000천원 - 자료 제작·인쇄비 등: 1,000천원	9,000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분야별 미니 공론장 운영	- 토론수당: 11,900천원 · 발표자: 350천원 × 2명 × 7회 = 4,900천원 · 토론자: 200천원 × 5명 × 7회 = 7,000천원 - 자료발간: 700천원 · 20천원 × 50부 × 7회 = 700천원 - 공론장 운영(장소대관, 현수막 등): 37,400천원 · 5,342천원 × 7회 = 37,400천원	50,000
합계			59,000

자료: 경기도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숙의공론장과 유사한 성격의 경기도 소관 재정사업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소요 비용은 숙의공론장의 운영 방식·규모 및 빈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assembly.go.kr